

의안번호	2215367
의 퇴 인	강선영의원
회 답 일	2026.2.10.
추계번호	25D6966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간부에게 일반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9억 4,400만원, 2031년 66억 9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15억 5,900만원(연평균 63억 1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간부에게 일반 장애보상금 지급 (안 제33조제2항)	5,944	6,124	6,306	6,495	6,690	31,559	6,312

주: 1. 간부에게 일반 장애보상금 지급(안 제33조제2항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 2. 본 추계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일반 장애보상금을 받고 있는 병사의 최근 실적치(지급 건수, 1인당 평균 금액 등)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3조제2항 (장애보상금)	모든 군인이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 ※현행법은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은 이미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,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에서 '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 외의 군인'은 제외하고 있음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3조제2항 (장애보상금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간부에게 일반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

[표 2] 현행법과 개정안

	현행법	개정안
간부	연금: 상이연금, 순직유족연금 기타: 사망보상금, 공무상요양비, 사망조위금 장애보상금(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 한정하며 일반 장애보상금은 제외)	장애보상금 (일반 장애보상금도 포함)

- 개정안에 따라 간부가 일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, 간부의 일반 장애보상금 지급률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받고 있는 병사의 지급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본 추계에서는 간부에게 일반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건수와 1건당 지급액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

- (지급 건수) 추계기간 동안 간부의 일반 장애보상금 지급건수는 매년 약 243건으로 예상

- － 국방부에서 제공한 간부 인원¹에 일반 장애보상금 지급율(병사 기준 0.12%)¹⁾을 곱하여 산출

- (1건당 지급액) 2026년 기준 2,375만원²⁾이고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상승률에 따라 상승

- － 일반 장애보상금 산식은 장애등급에 따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~9배이므로 최근 3년(2024~2026년)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 3.0% 적용

[표 3] 1건당 지급액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1건당 지급액	2,446	2,520	2,595	2,673	2,75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간부에게 일반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9억 4,400만원, 2031년 66억 9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15억 5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일반 장애보상금 부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지급 건수(a, 건)	243	243	243	243	243	—
1건당 지급액(b, 만원)	2,446	2,520	2,595	2,673	2,753	—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5,944	6,124	6,306	6,495	6,690	31,55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국방부의 결산 사업설명자료 2-1 등에 근거하여 병사에게 지급된 일반 장애보상금 지급건수를 병사 수로 나누어 산출

2) 국방부의 202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-1에 근거하여 병사에게 지급되는 일반 장애보상금 총액을 지급건수로 나누어 산출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현행법에 따라 일반 장애보상금을 받고 있는 병사의 최근 실적치(지급 건수, 1인당 지급액 등)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